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47
------------	------

발의연월일 : 2016. 12. 29.

발의자 : 김도읍 · 이현재 · 이은권  
김석기 · 조경태 · 이채익  
정갑윤 · 김태홍 · 전희경  
박찬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고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부당이득의 발생에 대해서도 일반인에 비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명의대여금지 등을 위반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임의적 규정인 「형법」에 따라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므로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두어 직무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신설).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몰수·추징 등)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55조(몰수·추징 등)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